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박기열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,

□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

서울특별시 소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
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
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함은 물론 교육기회 확대를 통
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.

구체적으로는

안 제4조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,
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계획에 따른 교육경비를 보조
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이와 같은 지원을 위
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또한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도·감
독 및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시 지원금을 취소 또는 환수 할 수 있도
록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,
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
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